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손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6.

발 의 자 : 손명수 · 문진석 · 김영배
문정복 · 강준현 · 문금주
황정아 · 어기구 · 전용기
김남근 · 한민수 · 부승찬
김한규 · 모경종 · 백승아
남인순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,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,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(지적측량업자)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음.

또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동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,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, 그 외의 지적측량 업무는 측량의 통일성 및 획일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 수행하고 있음.

한편 최근 국정감사 결과,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자료가 유출되어 무자격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과 이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

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,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.

이에 지적측량자료 유출 등 지적기술자의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자료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여하고,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지적기술자에 대한 지적측량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, 건전한 지적측량 시장의 정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(안 제42조제1항제3호, 제5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제3호 중 “지적측량을 하지”를 “지적측량 및 자료관리를 하지”로 한다.

제50조제1항 중 “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”를 “지적측량 및 자료관리를 하여야 하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2조(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 (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(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)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	제42조(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<u>지적측량을 하지</u>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	3. ----- ----- ---- <u>지적측량 및 자료관리를 하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생략) 제50조(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) ① 지적측량수행자(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<u>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</u>,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50조(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적측량 및 자료관리를 하여야 하며</u>,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-